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육아휴직급여 지급 근거 신설 〉

■ 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92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육아휴직급여 지급 근거 신설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정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11. 11.
3. 회 부 일 : 2025. 11.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사학연금에 적용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 수당 또한 교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유사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의2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교직원의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 간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육아휴직급여 지급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사립학교 교원에게만 육아휴직 제도와 수당이 적용되어 유사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 간 복지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u>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해</u> 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u><신설></u>	제1조(목적) ----- ----- <u>퇴직·사망,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해 및 육아휴직</u> ----- ----- ----- -----. 제33조의3(육아휴직급여의 지급) ①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의2에 따른 자녀의

	<u>양육 또는 여성 교직원의 임신이 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에 대해서 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 학교·공립학교의 교직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 는 규정을 준용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 휴직급여의 지급 및 신청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u>
제33조의3(재요양) (생략)	제33조의4(재요양) (현행 제33조의3 과 같음)
제46조(국가부담금) ① 국가부담금 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으로 한다.	제46조(국가부담금) ①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u>육아휴직급여 지급에 드는 비 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의 위임을 받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준용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함)」에 근거하여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음.

한편, 사립학교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에서 사무직원의 임용(휴직 포함),¹⁾ 보수 등은 정관 등으로 정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법인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임. 그 외에 사립학교 직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해당 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사립학교 직원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

1)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의 육아휴직 관련 조항 비교]

구분	교원	직원
육아휴직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 • (제1항제7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 교원의 임신·출산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 (제1항) 사무직원의 임용, 보수 등은 정관 등으로 정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 (제1항)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
육아휴직 수당/급여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 • (제3항) 육아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9(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 육아휴직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 등 국·공립 학교 교원의 휴직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 *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 대해 육아휴직 수당 지급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 (제1항) 사무직원의 임용, 보수 등은 정관 등으로 정함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 대해 요건 충족 시 육아휴직 급여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이와 같이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은 유사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과 관련 수당 지급에 차이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사학연금법」에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최근 3년간(2022~2024년)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의 육아휴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인원 대비 육아휴직을 한 인원의 비율은 교원이 1.2% 수준이고 직원이 3% 내외를 나타내고 있어 직원의 육아휴직 비율이 교원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각급학교별로 살펴보면, 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급의 육아휴직 비율은 직원이 교원 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음.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의 육아휴직 현황]

(단위: 명, %)

구분		교원			직원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유치원	전체(A)	31,473	31,009	30,061	2,528	2,243	2,046
	육아휴직(B)	92	157	217	3	2	2
	육아휴직 비율(B/A)	0.3	0.5	0.7	0.1	0.1	0.1
초등학교	전체(A)	1,547	1,546	1,554	393	391	381
	육아휴직(B)	55	53	60	3	5	5
	육아휴직 비율(B/A)	3.6	3.4	3.9	0.8	1.3	1.3
중학교	전체(A)	12,501	11,955	11,551	2,195	2,246	2,255
	육아휴직(B)	386	349	342	22	24	24
	육아휴직 비율(B/A)	3.1	2.9	3.0	1.0	1.1	1.1
고등학교	전체(A)	34,491	32,811	31,357	5,148	5,260	5,233
	육아휴직(B)	980	936	829	53	50	42
	육아휴직 비율(B/A)	2.8	2.9	2.6	1.0	1.0	0.8
대학교	전체(A)	70,209	69,027	68,078	168,468	173,059	166,762
	육아휴직(B)	148	146	154	5,306	5,349	5,712
	육아휴직 비율(B/A)	0.2	0.2	0.2	3.1	3.1	3.4
특수학교	전체(A)	2,611	2,620	2,612	855	849	826
	육아휴직(B)	99	93	85	15	13	12
	육아휴직 비율(B/A)	3.8	3.5	3.3	1.8	1.5	1.5
법인	전체(A)	-	-	-	812	836	826
	육아휴직(B)	-	-	-	8	8	8
	육아휴직 비율(B/A)	-	-	-	1.0	1.0	1.0
합계	전체(A)	152,832	148,968	145,213	180,399	184,884	178,329
	육아휴직(B)	1,760	1,734	1,687	5,410	5,451	5,805
	육아휴직 비율(B/A)	1.2	1.2	1.2	3.0	2.9	3.3

자료: 교육부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의 육아휴직 비율에서 직원이 교원 보다 적게 나타난 것에는, 교원과 달리 직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직원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경우, 직원의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고 직원과 교원 간 복지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안 제1조) 사학연금의 정의에 육아휴직 추가

- 개정안은 제1조 목적에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함.
- 현행 「사학연금법」은 제1조에서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해에 대한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²⁾ 제33조에서 해당 급여를 구체화하여 교직원의 퇴직·사망·장해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함.³⁾

2) 「사학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학연금법」

제33조(급여) 교직원의 퇴직·사망·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1. 퇴직급여: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3. 비공무상 장해급여: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4. 퇴직수당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

1. 요양급여
2. 재활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3. 장해급여: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4. 간병급여
5. 재해유족급여: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6. 부조급여: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 이와 같이 사학연금은 퇴직,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곤란한 교직원에 대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직무로 인하여 부상·질병·장애 등을 입은 교직원에 대해 재활 및 직무복귀 등을 위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되어,

개정안에서 「사학연금법」에 도입하려는 육아휴직급여와 성격이 상이하고, 「사학연금법」에서 지급되는 급여와 유사한 급여가 지급되는 다른 제도에서도 육아휴직급여가 도입된 사례가 없으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사학연금법」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될 필요가 있음.

[현행 연금법 등 목적 비교]

구분	내용
공통	「사학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u>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애</u> 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퇴직 급여 성격	「공무원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u>퇴직, 장애 또는 사망</u> 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u>퇴직하거나 사망한</u>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해 보상 급여 성격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u>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사망</u> 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u>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사망</u> 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안 제33조의3)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설

- 개정안은 제33조의3에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을 신설하여,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근거를 마련함.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제33조의3제1항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 사유를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의2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 교직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제3항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및 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사유는 현행 육아휴직 근거 조항인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를 인용한 것이고,⁴⁾ 직원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사유는 같은 법 제70조의2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⁵⁾ 정관 등에 직원의 육아휴직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4)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5)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임.

□ 이는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보이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휴직과 직원의 휴직을 포함한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정관 등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의 지급 근거도 「사립학교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는 국·공립학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사학연금법」에 따른 급여와 다른 기준 및 절차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므로,

서로 다른 기준 및 절차가 적용되는 개정안의 육아휴직급여와 현행 「사학연금법」의 급여를 같은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및 관련 수당 지급 근거,⁶⁾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국·공립학교 직원과의 동등한 처우 적용,⁷⁾ 등을 규정하려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개정안과 같이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근거를 「사학연금법」에 규정하는 경우에도, 현행 「사립학교법」

6)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0114호, 2025.4.25.),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1064호, 2025.6.25.),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5570호, 2025.12.24.)

7)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4780호, 2025.12.2.)

제70조의2는 휴직을 포함한 직원의 임용,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 등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원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대한 내용 중 법률, 대통령령,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 규정할 사항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안 제46조제1항제4호) 국가부담금에 육아휴직급여 지급 비용 추가

□ 개정안은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국가부담금으로 규정함.

□ 개정안에 따라 「사학연금법」에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근거가 마련될 경우 사학연금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 개정안에는 육아휴직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국가부담금⁸⁾으로 정하는 내용만 규정하여, 재원 부담 주체와 그 비율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8) 사학연금의 급여 등 부담금 종류 및 부담률

구분	부담률(기준소득월액 기준)		부담주체
	교원	사무직원	
연금부담금	개인부담금 9.00%	9.00%	• 교직원 본인
	법인부담금 5.294%	9.00%	• 학교경영기관
	국가부담금 3.706%	-	• 국가
	소계 18.0%	18.0%	
재해보상부담금	개인부담금합계액×454/10,000		• 학교경영기관
퇴직수당부담금	해당 연도 급여 소요액		• 공단: 매년 23,630백만원 • 대학법인: 대학소요분의 40% *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100% • 국가: 잔여액 전액

주: 2025년 기준
자료: 교육부

□ 아울러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포함하여 교원과 직원의 인건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른 보통교부금⁹⁾과 자체 재원 등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사학연금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경우, 재정수지 적자와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로 재정건전화가 요구되고 있는 사학연금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사학연금 재정수지 적자 및 기금 고갈 시점 추계]

구분			재정수지 적자	기금 고갈
사학연금	제6차 연금재정 장기추계	2025.12.	2028년	2047년
대한민국정부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	2025.9.	2026년	2047년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	2025.2.	2028년	2042년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출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 2025.9.,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2025.2. 참고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기준]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재정결함보조금 (A-B)
인건비(교원, 사무직원), 법정부담금, 학교운영비, 기간제교원 퇴직금 등	법인전입금, 순세계잉여금 기준 초과금액, 감사결과에 따른 반납금액, 인건비 초과 신청액 등	연초에 총액 규모를 산정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는 매월 교부 ※ 예산사정 또는 교육청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주: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학교(사립초, 국제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등),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 이상인 학교(재정자립교 포함)는 지원 제외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학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계획, 2025.3. 참고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교직원 간, 직원 상호 간의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함. - 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육아휴직제도 및 육아휴직수당(급여)에 관한 사항을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사무직원의 경우도 같은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 정합성에 비추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사학연금제도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 간 처우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도입되어 급여의 종류 등 제도 전반에 있어 공무원연금제도와 대부분 동일한데, 「공무원연금법」에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수당(급여)에 관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타 공적연금에서도 규정된 예가 없으므로, 「사학연금법」에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는 것은 타 공적연금과의 비교 차원에서도 적절하다 보기 어려움. - 아울러,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주체는 학교법인이므로, 국가부담금을 규정한 개정안으로 인하여 양 법률 간 적용 범위의 중첩에 따른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며, 급여의 부담 주체 및 규모 등은 국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재정당국 및 학교법인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견없음 - 다른 연금제도에서도 육아휴직수당(급여)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이를 연금법 내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육아휴직수당(급여)에 대한 별도의 재원을 명확히 마련하는 등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재원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대구광역시교육청: 일부수정 - 현행법상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휴직 전반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사립학교법」 제59조 교원의 휴직 조항과 같이 사무직원에게도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다른 휴직 관련 조항도 신설하는 것을 요청함.

문 의 처

02)6788-5192